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70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이만희 · 이성권 · 김기웅
엄태영 · 김상훈 · 강선영
진종오 · 구자근 · 서천호
권영진 · 이종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방에서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는 전력망 구축이 곤란한 지역에서 발전 설비 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소요되는 에너지원이므로,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로, “적용하고”를 각각 “적용하며”로, “적용하며”를 각각 “적용하고”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 ~~며~~ ,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u>고</u> ,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 ----- ----- <u>제1호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u> <u>적용하며</u> ----- ----- ----- <u>적용하고</u> ----- ----- <u>적용하며</u> ----- ----- ----- <u>적용하</u> <u>고</u> ----- ----- <u>적용하며</u>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u>2026년 12월 31일까지</u>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세의 면제) ① ----- ----- ----- ----- -----<u>2030년 12월 31일</u>-----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